##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58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 박정현・김 윤・박홍근

진선미 • 이용우 • 박홍배

이광희 · 김동아 · 고민정

박희승 · 김남근 · 노종면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경위를 두거나 정부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받아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국헌문란 행태를 보였음. 이때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위헌적인 계엄에 동조한 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의 출입을 막으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회의를 방해하였음.

이에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를 포함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 모두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시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적절

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4조 등).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 중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를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 신변보호를"로 한다.

제144조제2항 중 "파견을 요구"를 "파견받아 국회경찰대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파견하여야 한다.
- ④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국회 담장 밖 100m부터 회의장 건물 외 부까지의 범위에서 질서유지 등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 ⑤ 국회 경위와 경찰관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국회운영과 국가안전에 관련된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파견 경찰기동대) ① 의장은 국회의 경호에 긴급을 요한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경찰기동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요청받은 인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 ② 국회로 파견된 경찰기동대는 파견이 결정된 시점부터 「경찰직 무 응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③ 파견된 기동대의 해체는 「경찰직무 응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공고한다.
- 제144조의3(의장의 경호 지휘·감독 권한) 국회 경위와 경찰공무원(이 경우 국회로 파견된 경찰기동대를 포함한다)에 대한 의장의 지휘· 감독 권한은 「계엄법」 등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
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	<u> 신변보호를</u>
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생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	②
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	
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u>파견을 요구</u> 할 수 있다.	파견받아 국회경찰대를 설치
	<u>.</u>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서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받은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	경우 지체 없이 파견하여야 한
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u>다.</u>
<u>&lt;신 설&gt;</u>	④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감
	독을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
	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
	<u>은 국회 담장 밖 100m부터 회</u>
	의장 건물 외부까지의 범위에서
	질서유지 등 경호업무를 수행한
	<u>다.</u>
<u> &lt;신 설&gt;</u>	⑤ 국회 경위와 경찰관의 무기

<신 설>

<신 설>

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국회운영과 국가안전에 관련된 작전을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4조의2(파견 경찰기동대) ① 의장은 국회의 경호에 긴급을 요한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경찰기동대 파견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요청받은 인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② 국회로 파견된 경찰기동대는 파견이 결정된 시점부터 「경찰 직무 응원법」 제7조에도 불구 하고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

③ 파견된 기동대의 해체는 「경찰직무 응원법」 제5조에 도 불구하고 의장이 공고한다.

제144조의3(의장의 경호 지휘·감 독 권한) 국회 경위와 경찰공무 원(이 경우 국회로 파견된 경찰 기동대를 포함한다)에 대한 의 장의 지휘·감독 권한은 「계엄

법」 등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